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1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62호

###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규칙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맞춤형 복지제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복지점수 부여기준) ① (생략)

1. 기본 복지점수 : 개인별 1,000점씩 일률적으로 지급
2. 변동 복지점수
  - 가. 근속년수 점수 :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지급
  - 나. 부양가족 점수 : 배우자 100점, 부모 및 자녀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지급
  - 다. 다자녀 점수 : 셋째아 이상 가구 200점 부여
  - 라. 출산축하 점수 : 첫째아 1,000점, 둘째아 2,000점, 셋째아 이상 3,000점 부여
  - 마. 결혼축하 점수 : 결혼축하 200점 부여
  - 바. 휴직자 점수 : 육아 및 질병 휴직자에 대하여만 부여
    - 1) 육아휴직자 : 자녀 당 최초 1년이내인 자로 100% 부여
    - 2) 공무상 질병휴직자 : 100%부여
    - 3) 질병휴직자 : 70%부여

제7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(신설) ⑧ 지역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 복지점수의 10%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